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998. 7.22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1998년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7월 14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7월 22일
(제150회임사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교육청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률 제5467호, '97.12.17) 으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제정 (대통령령 제15611호, '98. 1.20) 됨에 따라, 동규정 제53조에서 위임한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 (안 제2조)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 (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상위법령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선출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개정(98.1)후 조례제정(98.7)의 지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